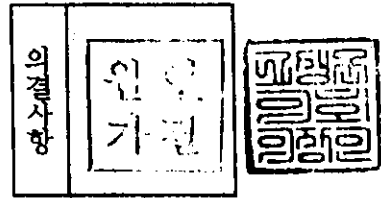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524호
의결(보고)	1995. 12. 28.
년월일	(제40회)

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12. 18.

고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(안)

의안번호 324

제출년월일 : '95. 12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○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및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4.7%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 사용이 많아 종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하고 여타 영업 2종, 육탕 1종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,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므로 경영수지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상수도 요금조정

(단위 : 원)

업종별	당 초			조 정			조정율 (%)
	기본요금	단계별	톤당요금	기본요금	단계별	톤당요금	
계			227.4			308.9	35.8
가정용	1,280	4	158.8	1,540	6	228.4	43.8
영업 1종	3,400	5	228.4	5,100	5	295.6	29.4
영업 2종	8,850	4	361.6	10,620	5	471.3	30.3
육탕 1종	52,000	4	327.4	58,000	5	423	29.2
육탕 2종	75,000	3	740	75,000	3	740	-
공공용	5,000	2	193.2	5,100	5	276.1	42.9

3. 참고사항

: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 -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개정('95.6.30까지)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8조1항 제7호중 "제29조제2항의"를 삭제한다

제20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재난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

제26조1항중 "별표 2"를 별첨과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표 2]

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

업종별		요율 (원)	비고	
구분	단계별			
가정용	기본 (0~10㎡)	1,540		
	초과	11 ~ 20	200	
		21 ~ 30	270	
		31 ~ 40	350	
		41 ~ 50	460	
		51이상	590	
영업용 1종	기본 (0~20㎡)	5,100		
	초과	21 ~ 50	280	
		51 ~ 100	360	
		101 ~ 300	470	
		301이상	610	
영업용 2종	기본 (0~30㎡)	10,620		
	초과	31 ~ 50	420	
		51 ~ 100	500	
		101 ~ 300	650	
		301이상	870	
육탕용 1종	기본 (0~200㎡)	58,000		
	초과	201 ~ 300	290	
		301 ~ 500	380	
		501 ~ 600	490	
		601이상	640	
육탕용 2종	기본 (0~200㎡)	75,000		
	초과	201 ~ 500	550	
		501 ~ 1000	670	
		1001이상	850	

업 종 별		요 금 (원)	비 고	
구 분	단 계 별			
공 공 용	기본 (0~20㎡)	5,100		
	초과	21 ~ 50	280	
		51 ~ 100	360	
		101 ~ 300	470	
		301이상	610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고성군수도급수조례 -</p> <p>제18조 (신고) ① 수도사용자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</p> <p>1. 2. 3 (생략)</p> <p>7. (삭제) <u>제29조제2항의 가구분할 납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고성군수도급수조례 -</p> <p>제18조 (신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 (소화용급수의 사용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신설)</p>	<p>제20조 (소화용급수의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재난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</u></p>
<p>제26조 (요금) ① <u>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</u> <u>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</u> <u>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</u></p> <p>다만,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6조 (요금) ① ----- <u>별표 2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(안)					
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	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		
업종별		요금		업종별		요금			
구분	단계별			구분	단계별				
가정용	기본 (0~10㎡)		1,280		가정용	기본 (0~10㎡)		1,540	
	초과	11 - 30	170			초과	11 - 20	200	
		31 - 50	230				21 - 30	270	
		51이상	300				31 - 40	350	
							41 - 50	460	
								51이상	590
영업용 1종	기본 (0~20㎡)		3,400		영업용 1종	기본 (0~20㎡)		5,100	
	초과	21 - 50	230			초과	21 - 50	280	
		51 - 100	280				51 - 100	360	
		101 - 300	380				101 - 300	470	
		301이상	490				301이상	610	
영업용 2종	기본 (0~30㎡)		8,850		영업용 2종	기본 (0~30㎡)		10,620	
	초과	31 - 50	350			초과	31 - 50	420	
		51 - 100	420				51 - 100	500	
		101이상	490				101 - 300	650	
							301이상	870	
육탕용 1종	기본 (0~200㎡)		52,000		육탕용 1종	기본 (0~200㎡)		58,000	
	초과	201 - 300	260			초과	201 - 300	290	
		301 - 500	350				301 - 500	380	
		501이상	400				501 - 600	490	
							601이상	640	

현 행				개 정 (안)			
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	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			
업 종 별			요 금	업 종 별			요 금
구 분	단 계 별			구 분	단 계 별		
육탕용 2 종	기 본 (0~200㎡)		75,000	육탕용 2 종	기 본 (0~200㎡)		75,000
	초과	201 - 500	550		초과	201 - 500	550
		501 - 1000	670			501 - 1000	670
		1001이상	850			1001이상	850
공공용	기 본 (0~30㎡)		5,000	공공용	기 본 (0~20㎡)		5,100
	초과	31이상	230		초과	21 - 50	280
						51 - 100	360
						101 - 300	470
						301이상	610